



2020. 3. 30.(월)

제380회 임시회

# 심 사 보 고 서

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

충 청 북 도 의 회  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# 목 차

## I. 심사경과

## II. 전문위원 검토보고

### 1.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

- 가. 예산안 편성방향
- 나. 예산안 편성 특징
- 다. 예산안 총규모
- 라. 일반회계 검토내용
- 마. 특별회계 검토내용
- 바. 채무부담행위(해당없음)
- 사. 계속비사업조서(해당없음)
- 아. 명시이월사업조서(해당없음)
- 자. 지방채조서(해당없음)

## III. 예산안 주요문제점(없음)

## IV. 예산 심사결과(원안가결)

## V. 심사의견 요지(생략)

## VI. 기타 필요한 사항(없음)

-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-

# 심 사 보 고 서

## 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0년 3월 27일, 충청북도지사

2. 상임위 회부일자 : 2020년 3월 27일

3.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: 2020년 3월 30일

### 4. 상정일자

○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: 2020년 3월 30일

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예산안조정 및 의결

## Ⅱ. 전문위원 검토보고

(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권영주)

### 1.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

#### 가. 예산안 편성방향

-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3월 24일 충청북도지사와 시장·군수가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사업을 합의·발표함에 따라 도비 부담분을 반영하였으며
-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구에 즉각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을 통해 가정경제의 붕괴를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안 편성

#### 나. 예산안 특징

- 세입예산
  - 세입재원은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사업을 위해 순세계잉여금 427억원 증액
- 세출예산
  - 코로나19로 피해를 겪고 있는 도민 생활안정과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예산 반영

## 다. 예산안 총규모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예 산 액	구성비 (%)	기정예산	구성비 (%)	비교증감	증감률 (%)	
합 계	5,248,917,891	100	5,206,167,891	100	42,750,000	0.82	
일 반 회 계	4,669,356,020	88.96	4,626,606,020	88.87	42,750,000	0.92	
특 별 회 계	579,561,871	11.04	579,561,871	11.13	0	0.00	
기 타	소 계	579,561,871	11.04	579,561,871	11.13	0	0.00
	소방특별회계	202,001,513	3.85	202,001,513	3.88	0	0.00
	의료급여기금	290,074,288	5.53	290,074,288	5.57	0	0.00
	농어촌개발기금	12,715,225	0.24	12,715,225	0.24	0	0.00
	학교용지부담금	27,755,000	0.53	27,755,000	0.53	0	0.00
	광역교통시설	10,176,000	0.19	10,176,000	0.20	0	0.00
	충청북도균형발전	36,839,845	0.70	36,839,845	0.71	0	0.00

-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5조 2,061억 원 보다 427억원(0.82%)을 증액한 5조 2,489억원임
  -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27억원(0.92%)을 증액한 4조 6,693억원이며
  -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음

## 라. 일반회계 검토내용

### 1) 세입예산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구성비 (%)	기정예산	구성비 (%)	비교증감	증감률 (%)
합 계	4,669,356,020	100	4,626,606,020	100	42,750,000	0.92
지방세수입	1,322,993,000	28.33	1,322,993,000	28.60	0	0.00
세 외 수 입	65,861,127	1.41	65,861,127	1.42	0	0.00
경상적세외수입	17,710,424	0.38	17,710,424	0.38	0	0.00
임시적세외수입	48,150,703	1.03	48,150,703	1.04	0	0.00
지방교부세	701,513,000	15.02	701,513,000	15.16	0	0.00
보 조 금	2,326,056,939	49.82	2,326,056,939	50.28	0	0.00
보전수입등 내부거래	252,931,954	5.42	210,181,954	4.54	42,750,000	20.34

○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조 6,266억원 보다 427억원 (0.92%)을 증액한 4조 6,693억원임.

- 지방세수입 : 변동사항 없음

- 세외수입 : 변동사항 없음

- 지방교부세 : 변동사항 없음

- 보조금 : 변동사항 없음

-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기정예산보다 427억원(20.34%)을 증액한 2,529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5.42%임

□ 보전수입등내부거래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기정예산	비교증감	증 감 률 (%)
합 계	252,931,954	210,181,954	42,750,000	20.34
보전수입등	117,150,000	74,400,000	42,750,000	57.46
내부거래	135,781,954	135,781,954	0	0.00

○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기정예산보다 427억원을 증액한 2,529억원이고, 순세계잉여금은 2019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추계하여 산출한 예산으로 결산검사 완료이전까지는 하지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금회추경의 재원으로 활용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

- 순세계잉여금 : 기정예산보다 427억원(61.07%)을 증액한 1,127억원으로 일반세입예산의 2.41%임
- 민간융자금회수수입 : 변동사항 없음
-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: 변동사항 없음
- 시·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수입 : 변동사항 없음

## 2) 세출예산(일반회계)

-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조 6,266억원보다 427억원(0.92%)을 증액한 4조 6,693억원으로 편성하였음
-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
  -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증액형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

### □ 기능별 세출예산

- 사회복지분야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427억원(15.14%)이 증액되었음

#### < 분야 별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구성비 (%)	기정예산	구성비 (%)	비교증감	증감률 (%)
합 계	4,669,356,020	100	4,626,606,020	100	42,750,000	0.92
일반공공행정	487,330,500	10.44	487,330,500	10.53	0	0.00
공공질서및안전	332,938,521	7.13	332,938,521	7.20	0	0.00
교육	233,159,563	4.99	233,159,563	5.04	0	0.00
문화및관광	193,079,002	4.14	193,079,002	4.17	0	0.00
환경	345,217,894	7.39	345,217,894	7.46	0	0.00
사회복지	1,837,979,471	39.36	1,795,229,471	38.80	42,750,000	2.38
보건	111,697,658	2.39	111,697,658	2.41	0	0.00
농림해양수산	463,745,066	9.93	463,745,066	10.02	0	0.00
산업·중소기업 및 에너지	154,724,523	3.31	154,724,523	3.34	0	0.00
교통및물류	150,932,382	3.23	150,932,382	3.26	0	0.00
국토및지역개발	121,883,983	2.61	121,883,983	2.63	0	0.00
예비비	28,088,671	0.60	28,088,671	0.61	0	0.00
기타	208,578,786	4.47	208,578,786	4.51	0	0.00



< 부 문 별 >

(단위 : 천원)

부 문 별	예 산 액	구성비 (%)	기정예산	구성비 (%)	비교증감	증감률 (%)
<b>합 계</b>	<b>4,669,356,020</b>	<b>100</b>	<b>4,626,606,020</b>	<b>100</b>	<b>42,750,000</b>	<b>0.92</b>
<b>일 반 공 공 행 정</b>	<b>487,330,500</b>	<b>10.44</b>	<b>487,330,500</b>	<b>10.53</b>	<b>0</b>	<b>0.00</b>
입법및선거관리	4,870,298	0.10	4,870,298	0.11	0	0.00
지방행정·재정지원	418,119,361	8.95	418,119,361	9.04	0	0.00
재 정 · 금 융	62,500	0.00	62,500	0.00	0	0.00
일 반 행 정	64,278,341	1.38	64,278,341	1.39	0	0.00
<b>공공질서 및 안전</b>	<b>332,938,521</b>	<b>7.13</b>	<b>332,938,521</b>	<b>7.20</b>	<b>0</b>	<b>0.00</b>
경 찰	51,880	0.00	51,880	0.00	0	0.00
재난방재·민방위	148,094,876	3.17	148,094,876	3.20	0	0.00
소 방	184,791,765	3.96	184,791,765	3.99	0	0.00
<b>교 육</b>	<b>233,159,563</b>	<b>4.99</b>	<b>233,159,563</b>	<b>5.04</b>	<b>0</b>	<b>0.00</b>
유아및초중등교육	216,470,372	4.64	216,470,372	4.68	0	0.00
고 등 교 육	15,864,711	0.34	15,864,711	0.34	0	0.00
평 생 · 직 업 교 육	824,480	0.02	824,480	0.02	0	0.00
<b>문 화 및 관 광</b>	<b>193,079,002</b>	<b>4.14</b>	<b>193,079,002</b>	<b>4.17</b>	<b>0</b>	<b>0.00</b>
문 화 예 술	44,557,544	0.95	44,557,544	0.96	0	0.00
관 광	24,435,103	0.52	24,435,103	0.53	0	0.00
체 육	94,956,646	2.03	94,956,646	2.05	0	0.00
문 화 재	29,129,709	0.62	29,129,709	0.63	0	0.00
<b>환 경</b>	<b>345,217,894</b>	<b>7.39</b>	<b>345,217,894</b>	<b>7.46</b>	<b>0</b>	<b>0.00</b>
상 하수도·수질	246,112,370	5.27	246,112,370	5.32	0	0.00
폐 기 물	11,672,780	0.25	11,672,780	0.25	0	0.00
대 기	80,518,208	1.72	80,518,208	1.74	0	0.00
자 연	6,914,536	0.15	6,914,536	0.15	0	0.00
<b>사 회 복 지</b>	<b>1,837,979,471</b>	<b>39.36</b>	<b>1,795,229,471</b>	<b>38.80</b>	<b>42,750,000</b>	<b>2.38</b>
기 초 생 활 보 장	325,051,023	6.96	282,301,023	6.10	42,750,000	15.14
취 약 계 층 지 원	325,250,937	6.97	325,250,937	7.03	0	0.00
보육·가족및여성	383,269,656	8.21	383,269,656	8.28	0	0.00
노 인 · 청 소 년	653,790,620	14.00	653,790,620	14.13	0	0.00
노 동	52,656,605	1.13	52,656,605	1.14	0	0.00
보 훈	3,058,599	0.07	3,058,599	0.07	0	0.00
주 택	94,902,031	2.03	94,902,031	2.05	0	0.00

부 문 별	예 산 액	구성비 (%)	기정예산	구성비 (%)	비교증감	증감률 (%)
보 건	111,697,658	2.39	111,697,658	2.41	0	0.00
보 건 의 료	108,249,915	2.32	108,249,915	2.34	0	0.00
식 품 의 약 안 전	3,447,743	0.07	3,447,743	0.07	0	0.00
농 립 해 양 수 산	463,745,066	9.93	463,745,066	10.02	0	0.00
농 업 · 농 촌	319,871,492	6.85	319,871,492	6.91	0	0.00
임 업 · 산 촌	131,738,427	2.82	131,738,427	2.85	0	0.00
해 양 수 산 · 어 촌	12,135,147	0.26	12,135,147	0.26	0	0.00
산업·중소기업및에너지	154,724,523	3.31	154,724,523	3.34	0	0.00
산 업 금 융 지 원	9,008,482	0.19	9,008,482	0.19	0	0.00
산 업 기 술 지 원	36,425,895	0.78	36,425,895	0.79	0	0.00
무 역 및 투 자 유 처	30,161,406	0.65	30,161,406	0.65	0	0.00
산 업 진 흥 · 고 도 화	41,639,992	0.89	41,639,992	0.90	0	0.00
에 너 지 및 자 원 개 발	4,336,110	0.09	4,336,110	0.09	0	0.00
산 업 · 중 소 기 업 일 반	33,152,638	0.71	33,152,638	0.72	0	0.00
교 통 및 물 류	150,932,382	3.23	150,932,382	3.26	0	0.00
도 로	110,720,305	2.37	110,720,305	2.39	0	0.00
항 공 · 공 항	1,015,500	0.02	1,015,500	0.02	0	0.00
대 중 교 통 · 물 류 등 기 타	39,196,577	0.84	39,196,577	0.85	0	0.00
국 토 및 지 역 개 발	121,883,983	2.61	121,883,983	2.63	0	0.00
지 역 및 도 시	47,883,316	1.02	47,883,316	1.03	0	0.00
산 업 단 지	74,445,667	1.59	74,445,667	1.61	0	0.00
예 비 비	28,088,671	0.60	28,088,671	0.61	0	0.00
예 비 비	28,088,671	0.60	28,088,671	0.61	0	0.00
기 타	208,578,786	4.47	208,578,786	4.51	0	0.00
기 타	208,578,786	4.47	208,578,786	4.51	0	0.00

□ 조직별 예산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구성비 (%)	기정예산	구성비 (%)	비교증감	증감률 (%)
합 계	4,626,606,020	100	4,626,606,020	100	99,345,388	2.19
본 청	4,417,167,276	94.60	4,374,417,276	94.55	42,750,000	0.92
공 보 관 실	4,765,212	0.10	4,765,212	0.10	0	0.00
감 사 관 실	349,934	0.01	349,934	0.01	0	0.00
여성가족정책관	57,053,059	1.22	57,053,059	1.23	0	0.00
기 획 관 리 실	800,589,660	17.15	800,589,660	17.30	0	0.00
재 난 안 전 실	149,227,800	3.20	149,227,800	3.23	0	0.00
행 정 국	121,819,631	2.61	121,819,631	2.63	0	0.00
보 건 복 지 국	1,736,733,297	37.19	1,693,983,297	36.61	42,750,000	2.52
경 제 통 상 국	117,660,080	2.52	117,660,080	2.54	0	0.00
신 성장 산업국	59,562,214	1.28	59,562,214	1.29	0	0.00
바 이 오 산업국	23,204,862	0.50	23,204,862	0.50	0	0.00
농 정 국	275,857,526	5.91	275,857,526	5.96	0	0.00
문화체육관광국	281,522,275	6.03	281,522,275	6.08	0	0.00
균 형 건 설 국	152,491,717	3.27	152,491,717	3.30	0	0.00
환 경 산 립 국	451,538,244	9.67	451,538,244	9.76	0	0.00
소 방 본 부	184,791,765	3.96	184,791,765	3.99	0	0.00

구 분	예 산 액	구성비 (%)	기정예산	구성비 (%)	비교증감	증감률 (%)
<b>직 속 기 관</b>	<b>59,874,160</b>	<b>1.28</b>	<b>59,874,160</b>	<b>1.29</b>	<b>0</b>	<b>0.00</b>
자 치 연 수 원	5,695,577	0.12	5,695,577	0.12	0	0.00
농 업 기 술 원	43,832,659	0.94	43,832,659	0.95	0	0.00
보건환경연구원	10,345,924	0.22	10,345,924	0.22	0	0.00
<b>외 청</b>	<b>11,095,347</b>	<b>0.24</b>	<b>11,095,347</b>	<b>0.24</b>	<b>0</b>	<b>0.00</b>
의 회 사 무 처	11,095,347	0.24	11,095,347	0.24	0	0.00
<b>사 업 소</b>	<b>181,219,237</b>	<b>3.88</b>	<b>181,219,237</b>	<b>3.92</b>	<b>0</b>	<b>0.00</b>
도로관리사업소	43,542,324	0.93	43,542,324	0.94	0	0.00
산림환경연구소	30,784,506	0.66	30,784,506	0.67	0	0.00
동물위생시험소	16,427,167	0.35	16,427,167	0.36	0	0.00
농 산 사 업 소	6,143,953	0.13	6,143,953	0.13	0	0.00
청남대관리사업소	12,781,184	0.27	12,781,184	0.28	0	0.00
내수면산업연구소	7,729,918	0.17	7,729,918	0.17	0	0.00
서울세종본부	679,686	0.01	679,686	0.01	0	0.00
북 부 출 장 소	1,039,450	0.02	1,039,450	0.02	0	0.00
남 부 출 장 소	4,134,425	0.09	4,134,425	0.09	0	0.00
충북경제자유구역청	57,956,624	1.24	57,956,624	1.25	0	0.00

□ 성질별 세출예산

(단위 : 천원)

부 문 별	예 산 액	구성비 (%)	기정예산	구성비 (%)	비교증감	증감률 (%)
합 계	4,669,356,020	100	4,626,606,020	100	42,750,000	0.92
인 건 비	150,194,152	3.22	150,194,152	3.25	0	0.00
물 건 비	101,565,068	2.18	101,565,068	2.20	0	0.00
경 상 이 전	2,609,626,457	55.89	2,609,626,457	56.40	0	0.00
자 본 지 출	1,250,973,854	26.79	1,250,973,854	27.04	0	0.00
내 부 거 래	528,907,818	11.33	486,157,818	10.51	42,750,000	8.79
예비비및기타	28,088,671	0.60	28,088,671	0.61	0	0.00

○ 성질별로 세출예산을 살펴보면

- 인건비 : 변동사항 없음
- 물건비 : 변동사항 없음
- 경상이전경비 : 변동사항 없음
- 자본지출 : 변동사항 없음
-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보다 427억원(8.79%)을 증액한 5,289억원으로, 세출예산의 11.33%를 차지하고 있으며, 기금전출금(재난관리기금) 427억원이 증액된 것임
- 예비비및기타 : 변동사항 없음

### 3) 일반회계 종합검토 의견

#### □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

-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생계가 어려운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됨
  
- 금번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중복형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민의 불안감 해소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
  - 다만, 이번 사업의 사업계획이 단기간에 작성되어 추진됨에 따라 사업대상, 소득심사절차, 집행방식 등의 적정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신속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
  - 중복형 긴급재난생활비 지원대상외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, 운수업체 종사자, 학원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
  
- 또한, 중복형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사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(가칭) 「충청북도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정을 전제로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
  -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 지원을 위해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마땅하나 관련 법령 제정 후 예산을 확보하는 절차적 요건이 준수될 필요가 있음

□ 지자체별 재난소득 추진현황<sup>1)</sup>

자치단체		사업명	지원금액	지원대상	비고
광 역	서울시	재난긴급생활비	가구당 30 ~ 50만원	중위소득 100%이하	
	부산시	긴급민생지원금	1인당 50 ~ 100만원	소상공인, 무급휴직자 등	
	대구시	긴급생계자금	가구당 50 ~ 90만원	중위소득 100%이하	
	광주시	긴급생계자금	가구당 최대 100만원	실직자·중위소득 100%이하	
	대전시	긴급재난생계지원금	가구당 최대 70만원	중위소득 50~100%	
	경기도	재난기본소득	1인당 10만원	경기도민 모두	
	강원도	긴급생활안정지원금	1인당 40만원	소상공인, 실업급여수급자, 청년구직자	
	충청남도	긴급생활안정자금	가구당 100만원	소상공인, 저소득층 등	
	전라남도	긴급생활비	가구당 최대 50만원	중위소득 100%이하	
	경상북도	재난긴급생활비	가구당 50 ~ 80만원	중위소득 85%이하	
	경상남도	긴급재난소득	가구당 30 ~ 50만원	중위소득 100%이하	
기 초	부산 기장군	재난기본소득	1인당 10만원	기장군민 모두	
	인천 강화군	소상공인 임차료지원	1인당 최대 150만원	소상공인	
	울산 울주군	보편적 긴급주민지원금	1인당 10만원	울주군민 모두	
	경기 성남시	긴급생활안정자금	가구당 30 ~ 50만원	중위소득 100%이하	
	경기 평택시	긴급생활안정자금	1인당 최대 100만원	소상공인, 비정규노동자, 노인 등	
	경기 화성시	재난생계수당	업체당 평균 200만원	소상공인	
	경기 파주시	긴급생활안정자금	1인당 최대 100만원	소상공인, 비정규노동자 등	
	강원 강릉시	긴급생활안정자금	1인당 최대 100만원	소상공인, 저소득층 등	
	전북 전주시	재난기본소득	1인당 52만7천원	중위소득 80%이하	
경북 경주시	재난기본소득	가구당 70 ~ 100만원	중위소득 85%이하	경북도 지원금 포함	

1) 3월25일자 경향신문 보도자료 참고

○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

(단위 : 원/월)

구 분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	비고
2018년	1,672,105	2,847,097	3,683,150	4,519,202	5,355,254	6,191,307	
2019년	1,707,008	2,906,528	3,760,032	4,613,536	5,467,040	6,320,544	
2020년	1,757,194	2,991,980	3,870,577	4,749,174	5,627,771	6,506,368	

마. 특별회계 검토내용

○ 2020년도 제2회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동이 없음

□ 예산안 총규모

(단위 : 원)

회 계 별	예 산 액	구성비 %	기정예산	구성비 %	비교증감	증감률 %	
합 계	579,561,871	11.13	579,561,871	11.13	0	0.00	
기 타	소 방 특 별 회 계	202,001,513	3.88	202,001,513	3.88	0	0.00
	의 료 급 여 기 금	290,074,288	5.57	290,074,288	5.57	0	0.00
	농 어 촌 개 발 기 금	12,715,225	0.24	12,715,225	0.24	0	0.00
	학 교 용 지 부 담 금	27,755,000	0.53	27,755,000	0.53	0	0.00
	광 역 교 통 시 설	10,176,000	0.20	10,176,000	0.20	0	0.00
	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	36,839,845	0.71	36,839,845	0.71	0	0.00



바. 채무부담행위 조서 : 해당 없음

사. 계속비사업 조서 : 해당 없음

아. 명시이월사업 조서 : 해당 없음

자. 지방채조서 : 해당 없음

Ⅲ. 예산안 주요 문제점 : 없음

Ⅳ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○ 부대의견

- 중복형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당초 추가경정 예산안대로 의결하되, 정부차원의 긴급재난 생활비 지원이 확정되면 국가 긴급재난 생활비 기준과 지원 대상을 고려하여 정부안과 연계·조정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의견제시

Ⅴ. 심사의견 요지 : 생략

Ⅵ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